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8 - 15호

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 모집공고[2차]

- 경기사랑 클럽리그 -

□ 사업목적

○ 생활체육의 경기도형 모델 개발 및 자율 클럽리그 운영으로 도민의 건강 ·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저변확대

○ 시·군별 특성을 반영하고 유소년·청소년·대학이 연계되는 지역단위 자율 클럽리그 발굴 · 육성으로 건강한 사회인 양성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8년 4월 ~ 11월(8개월간)

○ 사업장소 : 경기도 일원

○ 운영종목 : 거점시설 별 자율선택(클럽운영 종목)

○ 운영개소 : 거점센터 10~15개소, 생활체육 클럽 100~120개소

○ 지원자격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 ***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협약 必**

○ 선정기준 : 사업계획, 자부담 비율, 거점시설 확보 등

※ 제한사업 : 기존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

○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	비 고
자율리그	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클럽 대상 리그 운영 - 종목 : 자율선정(리그운영 가능 종목) - 리그일정은 장소나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설정(매주/매월)	
클럽운영	지역 내 클럽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- 종목 : 자율리그 운영종목 - 매주 1~2회 이상 수업	

○ 주 최 : 경기도체육회

○ 주 관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

□ 진행절차

①	사업 계획 수립 《1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● 운영지침 수립(사업운영 방향 및 지원내용/규모 등)
②	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《2월》	⇒	■ 모집공고 안내 ● 홈페이지, 시·군청 및 체육회 안내 등 ■ 사업계획서 제출 ● 접수처 :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※ 종목단체/시·군체육회 → 경기도체육회
③	심사/선정결과 공지 《3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● 심사 : 생활체육위원회 심의 ● 공지 : 공문시행
④	사업설명회 《3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● 대상 : 종목단체 및 시·군 담당자, 매니저 등 ● 내용 : 사업설명 및 사업비신청/집행/정산 관련 등
⑤	사업비(보조금) 신청 《3월》	⇒	■ 주관단체(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) ● 보조금신청서, 세부계획서, 통장사본 첨부
⑥	사업비 검토/교부 《3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● 매월지급 : 강사, 매니저수당 ● 일괄지급 : 용품구입비, 이벤트 운영비 등
⑦	사업운영/평가 《4~12월》	⇒	■ 리그(월2회 이상), 클럽(주1~2회) ● 기간 : 2018년 4월~11월(8개월간)
⑧	실적 보고 《매월초》	⇒	■ 시·군체육회 ● 실적보고 : 매월 5일이내 ※ 클럽 → 거점센터 → 주관단체 → 경기도체육회
⑨	결과 보고 《사업종료 후》	⇒	■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《별첨5》 ※ 거점센터 → 주관단체 → 경기도체육회
⑩	정산 확정/반납 《사업종료 후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→ 사업정산 확정 통지 ■ 주관단체 → 집행잔액 반납

※사업진행 중 일정 변동 가능

□ 세부추진계획

❍ 사업공고

가. 공 고 일 : 2018년 2월 초 ***선정개소 미달 시 재공고**

나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문서발송, SNS 등

❍ 자격대상

가. 사업신청대상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

나. 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 협약이 완료된 단체

다. 주관단체에서 리그운영 대상 자체 선정

· 종목선정 :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목 자체 선정(리그 운영이 가능한 종목)

· 대상선정 : 관내 클럽 10개소 내외(인근지역 포함가능)

❍ 사업신청서 제출

가. 제출서류

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(산출내역/연락망 포함)

③ 시설이용 협약서(거점시설)

나. 제출방법(시군체육회 → 경기도체육회)

· 제출기간 : 2018. 3. 1(목) ~ 3. 7(수)

· 제출방법 : 공문 이메일 접수(hn2010@ggsc.or.kr)

· 담 당 자 :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이희나(031-250-0452)

□ 심사방법

❍ 심사단계

가. 1단계 : 요건심사

· 자격기준 및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나. 2단계 : 생활체육위원회 심사

· 평가기준을 근거로 요건별 정량평가

※ 개소별 지원액 → 소요예산 참조

다. 3단계 : 결과공지

· 공 개 일 : 2018년 3월중

· 공개방법 : 홈페이지 및 문서

❍ 심사기준(안) : 총점 100점

구 분	평 가 내 용	배점
혁신가치 반영	■ 혁신사업 가치 반영(자원봉사, 기부문화, 가족참여, SNS활용 등) - 빈약(10), 미흡(15), 보통(20), 양호(25), 우수(30)	30
사업계획	■ 운영체계, 안전, 현실성, 목적 부합 여부 등 - 빈약(4), 미흡(8), 보통(12), 양호(16), 우수(20)	20
시설확보	■ 시설확보 여부 및 지역특성 등 - 빈약(10), 미흡(15), 보통(20), 양호(25), 우수(30)	30
사업효과	■ 운영횟수, 참여인원, 참여대상(배려계층 우선지원) 등 - 빈약(4), 미흡(8), 보통(12), 양호(16), 우수(20)	20

□ 주요업무

❍ 조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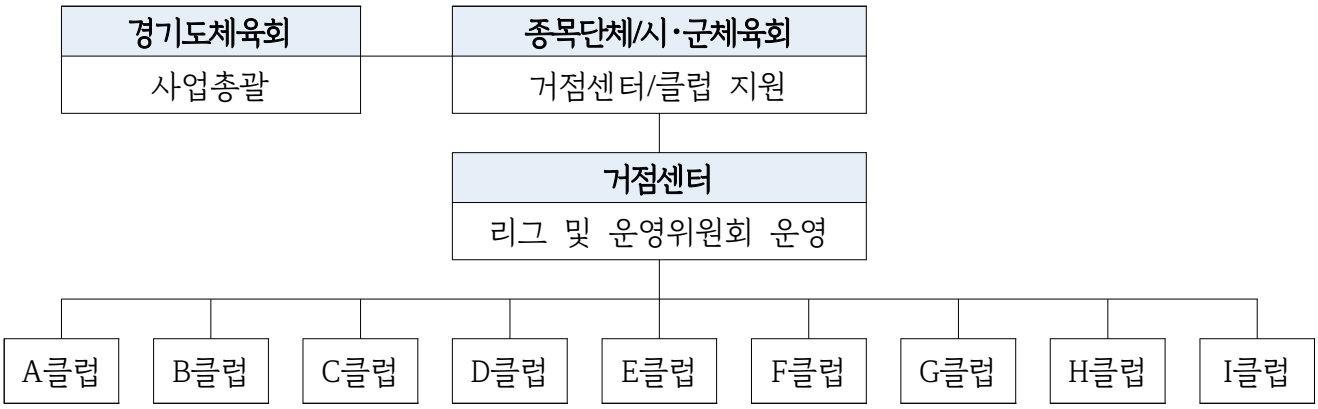

❍ 역 할

구 분	역 할	비 고
경기도체육회	· 기본계획 수립 · 사업총괄운영 및 지원관련 업무 ·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· 사업홍보 등 기타업무	
주관단체 (종목단체/ 시·군체육회)	· 사업계획수립 및 거점시설 확보 · 리그운영 및 클럽 운영지원 관련(용품구입, 수당지급 등) · 운영실적 보고(매월) → 도체육회(인트라) · 수시 현장 점검	

구 분	역 할	비 고
거점센터	· 리그 운영 총괄(리그 운영 시 거점센터 내 매니저 상주) ·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- 구성 : 주관단체 담당자1, 매니저1, 학교관계자 2(교수, 교사 등)을 포함하여 7인 이내 - 리그 운영관련 지침 및 규정(룰) 마련 및 기타 운영자문 등 · 운영비 청구(매니저 → 주관단체) · 운영실적 취합(매월) 및 보고 → 주관단체 · 리그 자원봉사 배치 및 운영 · 이벤트 운영 관련 사항	주관단체와 거점시설간 사용협약 必 **(매니저 배치)**
강 사	· 클럽별 생활체육 교실 현장지도(리그종목) · 클럽내 캠페인 운영(ex. 고운말쓰기 운동 등) · 클럽운영 자료 작성 및 보고 - 수업일지, 출석체크, 사진촬영 등 · 참가자 업무 공조 등	

□ 운영방법

❍ 클럽운영(생활체육 교실)

가. 대 상 : 유소년(유치원 포함), 청소년, 여성

나. 운영종목 : 자율선택(리그운영 가능한 단체 종목)

다. 운영개소 : 10개소 내외(거점시설별) *총 60~80여 개소

라. 운영시간 : 주 1~2회, 1회당 1시간 이상(클럽별 최대 월 8회 운영)

- 시간 및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실시
-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 미운영시 대체 수업 진행 ***당일 2회 연속 불가**

마. 강사 배치

- 주관단체와 계약체결
- 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 및 은퇴선수 우선채용(자격증 미소지자 기관장 추천서 제출)

바. 운영회비

- 자율적으로 자체 회비 운영가능(별도 통장 개설)

☞ 자체회비는 운영비로 활용(보험가입, 대관료 등)

사. 캠페인 운영

-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인성교육, 스포츠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클럽 내 캠페인 운영 必(ex. 고운말쓰기 캠페인 등)

❍ 리그운영

가. 운영종목 : 주관단체 자율 선정(클럽 운영종목)

- 가치중심의 신체활동으로 정규 종목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함(ex, 뉴스포츠 등)

나. 운영횟수 : 거점센터, 종목,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***리그 1회 당 2경기 이상 진행**

다. 대　　상 : 동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팀

라. 운영방법

- 리그운영 지침 및 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
- 순위제 등을 배제하고, 사회성발달 및 인성함양 등 가치중심의 리그 운영
- 거점시설과 사용협약 후 정기적 리그운영(리그운영비로 대관비 지급 가능)

☞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월간, 분기별 일정 수립 후 사전공지

- 클럽관리자(교사 등)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경기운영

☞ 지역내 은퇴선수, 체육교사 및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리그운영 봉사자 모집

- SNS 활용을 통해 리그 참여 클럽 간 소통 및 활성화 유도

❍ <u>스포츠</u> 이벤트

가. 운영시기 : 연1회 이상 자율

나. 대　　상 : 클럽 참여자

다. 운영내용 : 엘리트선수 초청강습, 경기관람, 운동회 개최 등

라. 지원내용 : 세부내역 자율편성

구　분	편성가능 항목(예시)	비 고
엘리트선수 초청강습	· 강사수당 · 운영비(대관비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경기관람	· 차량임차비 *유류비 집행불가 · 운영비(입장권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운동회 개최	· 용역비(진행 및 음향 등) · 운영비(대회용품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기　타	·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스포츠 이벤트 운영 ex, 수상스키 등	

마. 후　　원 :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의 후원(경기관람권, 간식 등) 등을 확보하여 이벤트 운영(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必)

□ 안전대책

○ 스포츠안전 보험 가입

가. 리그운영 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가입

나. 클럽운영(강습) 시 자체회비 활용하여 보험가입은 또는 개인보험 활용

○ 리그운영 시 안전요원 및 구급요원(구급차 등) 배치

○ 지역별 지정병원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

○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구급함 지원(클럽별)

□ 사업비 지원 및 정산

○ 항목별 지원내용

(단위 : 원)

구분	지원항목	지원내용	지급시기	비고
리그 운영비	매니저수당	400,000원×8개월	매월	월별지급, 소득공제 必
	리그운영비	500,000원×2~4회×8개월	매월	
	스포츠이벤트	강사수당, 현수막, 보험료, 임차료(버스 및 시설 등), 관람료 등	3월중	
클럽 운영비	강사수당	50,000원×4~8회×8개월	매월	월별지급, 소득공제 必
	용품구입비	500,000원(소모성 용품)	3월중	
	운영비	300,000원 (현수막 제작, 구급함 구입 등)	3월중	

※ 사업운영 시 경기도 재정후원, 경기도체육회 주최사업임을 명시

- 현수막 제작(안)

- 2018 경기사랑 클럽리그 -

○○시 '청소년 농구클럽'

• 일시 :
• 장소 :
• 주최 : 경기도체육회
• 주관 : 시·군체육회/종목단체
• 후원 : 경기도

함께 가자 경기 체육

❍ 정산서류

가. 결과보고 : 결과보고 양식 별첨

나. 지출증빙 :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, 영수증*, 견적서, 관련사진

* 영수증 : 카드결재 시 카드영수증

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다. 용품구입비의 경우, 사업시작 전 용품구입 및 전달(인수증 제출 必)

❍ 정산지침

가.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본회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계좌로 반납

※ 정산보고→정산서 검토 및 확정·반납 통지→집행잔액 반납

나. 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

다. 모든 사업비는 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

※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·현금매출영수증은 정산 불가

※ 현금 인출 후 사업비 집행 불가

※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증빙 제출

※ 물품 사진, 내역서(견적서)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

라. 매니저 및 강사 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

마. 지출증빙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대조필 날인

□ 행정사항

❍ 매니저 및 강사의 배치

가. 자격기준

-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풍부하며, 남다른 봉사정신을 갖춘 자
-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자

나. 자격요건(강사)

- 해당종목 자격증(생활체육지도자 등) 소지자 및 은퇴선수
  (자격증 미소지자는 시 · 군체육회장 추천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)

다. 배치방법

- 고용인(주관단체장)과 피고용인(매니저, 강사) 간 계약서 작성
- 사업취지, 안전사항 등 교육 후 현장 배치
- 강사는 반드시 참가자 출석체크 및 수업일지 작성
- 지도자가 부득이하게 수업에 불참할 경우 대체 인력을 배치·운영

❍ 실적보고

가. 제출사항 : 클럽 및 리그운영실적

나. 제출기한 : 익월 5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인트라넷 댓글제출 ***시행문 제외**

❍ 결과보고

가. 제출사항 :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(양식 별첨)

나. 제출기한 :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(2018.12.15.까지) 제출

다. 제출방법 : 공문서 우편제출(지출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)

❍ 기타사항

가. 사업운영 변동사항 발생 시(운영시간, 장소, 강사 등) 필히 본회 승인 후 실시(변경사유 첨부)

나. 클럽 운영 시 반드시 강사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사업목적 및 주의사항 등 전달

다. 시·군체육회는 현장 운영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체크

※ 수업당일 교실전경 사진 첨부하여 일지 작성 必
(사진에 날짜가 기재되는 모바일폰 어플 활용)

※ 일정 변경 시 본회사전 통보 必, 수시 현장체크 예정
(수업 미실시에 따른 현장적발 시 사업비 반납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)

라. 지속적인 참여인원 감소 및 최소 인원 운영 시 대상 변경 검토